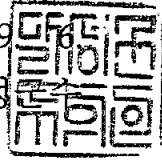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9
------------	-----

제출일자 : 2009

제출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08.07.0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정원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제고  
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규정(안 제2조) : 658명
-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안 제3조)
- 다.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안 제4조, 제5조)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9조 내지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09. 5. 28 ~ 6. 8(11일간) 의견 있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65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4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3조(정원의 책정기준) ① 군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8% 이상	10% 이내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 공무원

구 分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2. 기능직 공무원

구 分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20% 이내	35% 이내	31% 이내	1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分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4. 별정직 공무원

구 分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分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군 출장소	면
총 계	658	380	12	99	77	90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60	344	8	59	70	79
3급	1	1				
4급	4	3		1		
5급	33	19	3	2	3	6
6급이하 계	522	321	5	56	67	73
별정직 계	11	1		10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1	1		10		
연구직 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기능직 계	61	33	4	6	7	11